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 위 · 수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)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2023/4/28 개정 · 2023/4/30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 위 · 수탁 관련 내부통제기준(제2-24조)

-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의 위 · 수탁을 허용하되,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보완
 -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인 주식, 금리, 원자재 등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, 대표적으로 ELS·DLS 등이 이에 해당
 - 자본시장법 개정(2021.5. 시행)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업무를 다른 증권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, 이에 맞추어 증권사에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함
 - 구체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·수탁하려는 증권사는 i) 위탁대상을 투자위험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ELS에 한정하고, ii)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며, iii)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·수탁사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함

□ 탄소배출권 위험값 규정(제3-20조)

- 탄소배출권의 위험값을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과 동일한 18%로 정함
 - 증권사는 NCR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를 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적립하여야 함
 - 탄소배출권은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'기타자산'으로 분류되어 32%의 위험값이 책정되어왔음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2-24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

- 이를 개선하여,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·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18%의 위험값이 적용되도록 합리화

□ 기업공개(IPO)시 주관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(제4-19조)

- 기업공개(IPO)시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실제로 청약한 주권의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허수성 청약 방지
- IPO시 주관사는 공모주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관투자자에 공모주를 배정하고, 이렇게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음
 - 수요예측 :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 매수가격, 수량,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절차
- 그러나, 일부 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, 즉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과 과당경쟁이 악순환을 형성, 허수성 청약 관행이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을 저해하여 공모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지속
 - 예) 2022년 L사 IPO시 순자본금 5억원, 순자산 1억원의 기관투자자가 9.5조원 수요를 제출하는 극단적 사례 발생
- 허수성 청약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,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관사의 허수성 청약 방지 및 수요 관리 책임을 강화

□ 예금자보호법 설명의무 명확화(제4-44조)

-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투자자예탁금도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 문구상의 오류를 정비

□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사항 정비(제9-3조)

-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등 관련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심의토록 함

□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시 영업양수도 승인 대주주요건 완화(별표3 제3호)

-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영업양수도 승인시, 인가와 동일하게 대주주 요건을 완화
 - 현재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영업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동일 그룹내에서 지점의 본점을 변경하는 등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 등 일부 인가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
 - 이에 인가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영업양·수도 승인에도 동일한 특례를 도입하여 승인 절차도 함께 간소화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